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 상향 -

특별긴급관세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기획재정부령 제1029호(‘23.12.29.)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개정이유

-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2023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464,422톤에서 654,955톤으로 상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II. 개정내용

-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준발동물량 상향 [별표1]

품목번호	품명	기준발동물량	특별긴급관세율(%)
1006.10.0000	벼	654,995톤	684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찰쌀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102.90.2000	쌀가루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품목번호	품명	기준발동물량	특별긴급관세율(%)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654,995톤	684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

[붙임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029호) (20240101)

### I Contact



소윤희 관세사

T 02-6011-3012  
E yhs0@esein.co.kr



성단샘 관세사

T 02-6011-3021  
E dsseong@esein.co.kr